

1. 개정이유

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, 아동학대 발생 건수,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554호, 2023. 7. 18. 공포, 2024. 1. 19. 시행)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 등 규정(안 제27조의2 및 별표5 신설)

나.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서식 개정(안 별지 제16호 서식)

별지 제16호 서식 중 ‘확인 대상 범죄경력’에 법 시행령 [별표7] 범죄 경력 확인 대상 범죄 개정(2021. 6. 29.)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등)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 등은 별표 5와 같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제1호 중 “제8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(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)”를 “제8조, 제8조의2, 제9조부터 제15조까지,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”로 하고, 같은 뒤쪽 제2호 중 “제14조까지”를 “제14조까지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”으로 하며, 같은 뒤쪽 제5호 중 “제17조제2호 및 제4호”를 “제17조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 등(제27조의2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입지조건

시설은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, 시설 50미터 주위에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나목3) 및 「청소년보호법 시행령」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는 선정할 수 있다.

나. 시설은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다. 시설의 구조 및 설비

1)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.

가) 주택형 숙사는 아동용 방 2개, 직원용 방 1개, 심리치료용 방 1개 등 총 4개 이상의 방을 갖추어야 한다.

나) 심리치료용 방에는 놀이치료·미술치료·음악치료,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다) 그 외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2] 제 1호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) 1)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2. 운영기준

가.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3]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의 성별, 연령, 상담 및 심리검사, 가정환경조사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다.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정원은 8명 미만으로 한다.

3. 종사자의 배치기준

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1명, 보육사 4명,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
4. 종사자의 자격기준

가.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2)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·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6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7)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8) 직업훈련교사, 간호사,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보육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3)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

다.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이 표에서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등) 법 제53조 의2제4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설치기준·운영 및 인력 등은 별표 5와 같다.</u>